붙임1

2019학년도 전과 안내

1. 목적

재학생들이 적성과 희망에 따라 학과(부) 또는 전공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전과를 실시하고자 함.

2. 시행근거

가.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3항

나. 중원대학교 학칙 제22조

다. 중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22조 내지 제129조

3. 지원자격 및 허용범위

가. 지원자격

2019년 전과 신청기간(2019. 1. 21.(월) ~ 1. 31.(목)) 현재 본교 재학 중인 자로서 **2019학년도 2학년 1학기 부터 4학년 1학기 진급예정자**

※ 편입생은 전과 불가

나. 허용범위

1) 학년별 전과가능 인원: 입학정원의 50% - [학년별 차감인원]

구분	차감 인원
2학년	없음
3학년	동일 학과별 2018학년도 2학년 전과 허가인원
4학년	동일 학과별 2017학년도 2학년 및 2018학년도 3학년 전과 허가인원

2) 타과 학생이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로는 전과할 수 없으나, 소속학생의 타 학과 또는 전공으로의 전과는 허용.
임상병리학과, 작업치료학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 전과 가능.

3) 학년에 따라 모집중단 학과, 신설된 학과(전공)는 전과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.

붙임1

4. 전과 신청기간 : 2019. 1. 21.(월). ~ 1. 31.(목).

5. 전과 예정 인원 : 첨부된 「2 · 3 · 4학년 전과 여석」 참조

6. 자격 요건

가. 재학기간 중 총 평점평균 1.75이상이고 해당 학년 수료학점의 80% 이상을 이수한 자.

수료학점의 80%	2학년 전과	3학년 전과	4학년 전과
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	26	52	78
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	28	56	84

나.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함

※ 전과 신청은 2학년 이상 진급예정시 1회 신청 가능

다. 편입생은 전과 할 수 없음

라. 예·체·능 특기자로 입학한 경우 실기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전과를 제한함.

마. 항공운항학과, 항공정비학과 전과 요건

1) 성적: 총 평점평균 B학점(3.0) 이상
2) 영어: 토익 750 이상
3) 인성검사 및 면접 실시
4)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(항공운항학과 지원자만 해당)

※ 항공운항학과, 항공정비학과 전과시 조종사 및 정비사 면허 취득을 위해 8학기를 초과할 수 있음

7. 전과 신청 절차

가. 전과 신청서(본인이 출력, 본인 및 보호자 날인) 작성

나. 성적증명서 1부 첨부

※ 항공운항학과, 항공정비학과 지원자 추가 제출 서류

1) 유효기간 내 TOEIC(토익) 영어 성적표 원본 1부.(공통)
2) 항공신체검사증명서 1부.(항공운항학과 지원자 해당)

다. 현 소속학과(부)장과 지원학과 학과(부)장 및 학장으로부터 각각 날인 받은 후 현 소속 대학 학사운영팀에 제출

1) 사회문화대학 : MII 705 Tel. 043-830-8553～5, 7
2) 융합과학기술대학 : MII 604 Tel. 043-830-8573, 6～8
3) 의료보건대학 : MII 605 Tel. 043-830-8673～4
4) 항 공 대 학 : MII 1004 Tel. 043-830-8477～8

8. 면접 실시 안내

가. 해당 학과: 항공운항학과, 항공정비학과, 항공재료공학과, 항공서비스학과

나. 일시 및 장소: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안내

다. 면접 결과 교학지원처 송부 : 2019. 2. 8.(금) 17:00 까지

라. 유의사항

1) 면접위원은 해당 학과 교원을 원칙으로 3명이상이 면접에 참여

2) 면접점수는 면접위원 3명 이상의 평균으로 구함

9. 전과 확정 : 2019. 2. 11.(월) → 전 · 출입학과에 통보

지원자가 많을 경우 총평점평균, 평점합계, 취득학점, 이수과목수 순으로 선발

10. 학점 인정

가. 전과한 자는 전입 학과, 학년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.

나. 전과의 경우 전출 학과에서 이수하였던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변경 처리되며, **전과한 학과의 전공과목들을 새로이 이수해야 하므로 졸업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**

11. 주의사항

가. **전과를 허가한 학기(2019학년도 1학기)에는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 됨.** (근거: 장학금 지급규정 제11조12호)

나. 전과로 인한 **등록금액의 변동**에 주의.